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G-70-HF-01
Ver. 1.5
2024.04.01

주관부서: 윤리경영담당

개정 이력

개정번호	일 자	개정 내용	작성자	비 고
V 1.0	2019.12.04	신규 제정	한난영	
V 1.1	2020.05.13	조직개편 변경사항 반영, 신고처 변경	김은정	
V 1.2	2021.07.07	조직개편 반영, 신고처, 관련사규 변경	유영군	
V 1.3	2021.11.08	조직개편 반영, 규정 일부 변경 (2.1, 3, 4, 7)	정승민	
V 1.4	2024.02.29	조직개편 반영, 규정 일부 변경 (2.1, 4)	홍의수	개 정
V 1.5	2024.04.01	사명 변경	홍의수	

Copyrightⓒ LOTTE INNOVATE Co., Ltd.

목 차

1. 개요 4

1.1 목적 4

1.2 적용 범위 4

2. 임직원의 기본의무 4

2.1 임직원 기본윤리 4

2.2 회사 자산 보호 5

3. 위반시의 조치 5

4. 담당 조직 6

5. 제보자 보호 6

6. 포상 및 징계 6

7. 신고처 7

8. 관련 사규 7

9. 갱신 절차 7

Copyrightⓒ LOTTE INNOVATE Co., Ltd.

1. 개요

1.1 목적

본 지침은 윤리헌장의 성실한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법령 및 사내 제반 규정에 따라 롯데이노베이트㈜(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데 있다.

1.2 적용 범위

본 실천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2. 임직원의 기본의무

2.1 임직원 기본윤리

(1)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경영활동에 관련된 법규, 사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여 업무에 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임직원은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윤리경영담당원이 소속된 부서(이하 "윤리담당부서"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이해관계가 상충한 경우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사적 용도로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임직원 및 파트너사에 인사청탁, 편의제공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임직원 및 파트너사간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Copyrightⓒ LOTTE INNOVATE Co., Ltd.

(6)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관련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금품 기타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 교부, 수령 또는 청탁하는 행위
- 재산상 또는 기타 이익을 얻거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자 기타 단체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
- 입찰 또는 수의계약 체결 시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합의하는 행위 (예 : 절차에 참여한 다른 당사자와 정보를 교환하거나 가격, 생산량 등 거래 요소를 합의하는 행위)
- 제3자 기타 단체의 행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제3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손상, 훼손시키거나 협박 기타 불이익을 가하여 행동을 강제, 강요하는 행위

상기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를 중대한 측면에서 방해하기 위해 조사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파기, 위조, 변조 또는 은폐하거나 조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및/또는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식을 공개하거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3자에 대하여 협박,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

2.2 회사 자산 보호

(1) 회사의 경영정보 및 중요정보를 보호 하고,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고객 정보 및 파트너사와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보호 관련법규를 준수 한다.
(3)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한다.
(4)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적극적으로 보호 한다.

3. 위반시의 조치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지침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Copyrightⓒ LOTTE INNOVATE Co., Ltd.

(2) 당사 또는 파트너사의 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사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윤리담당부서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4. 담당 조직

(1) 윤리행동강령 및 실천지침의 운영과 관련한 담당조직은 윤리담당부서로 한다.

(2) 임직원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비윤리행위 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지침 위반의 발생이 의심되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와 관련한 회사의 모든 문서를 보존하고 일체 파기, 변조, 은닉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국가 등 조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제보자 보호

(1) 회사는 제보자의 정당한 제보 및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주지 않는다.

(2) 윤리담당부서는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 윤리담당부서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6. 포상 및 징계

(1) 포상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제보, 신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보, 신고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수준과 절차는 인사규정(R-60-GA-01)에 따른다.

Copyrightⓒ LOTTE INNOVATE Co., Ltd.

(2) 징계

윤리행동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등급 등 처벌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7. 신고처

비윤리행위 신고처는 아래와 같으며, 이메일,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문고 : https://www.lotteinnovate.com/cscenter/sinmungo**
2. **이메일 : ldcc_ethics@lotte.net**
3. **전화번호 : 02-2626-6699**
4.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윤리담당부서**

8. 관련 사규

문서번호	사규명
R-70-HF-02	윤리행동강령
R-70-HF-04	청렴실천규정

단, 본 규정 외 사항은 롯데그룹「윤리경영 실천지침」을 따른다.

9. 갱신 절차

본 절차는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다

Copyrightⓒ LOTTE INNOVATE Co., Ltd.